

집합투자기구 변경대비표

1. 대 상 편 드 : HDC퇴직연금종은지배구조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2. 대 상 서 류 : (간이)투자설명서
3. 변 경 시 행 일 : 2025년 02월 20일 (목)
4. 주요 변경내용 : 채권 부문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이상 → 허송구)
세법 개정사항 반영(외국납부세액)

[투자설명서]

(작성 기준일 : 2025.01.31)

| 항 목 | 정정 전 | 정정 후 |
|---|--|---|
| 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 | - * 채권 부책임운용역 : <u>이상</u> | -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작성 기준일 기준 업데이트 * 채권 부책임운용역 : <u>허송구</u>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연 혁 | - | - 2025.02.20 : 채권 부문 부책임운용전문인 력 변경(이상 → 허송구) 세법 개정사항 반영(외국납부세액)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에 관 한 사항 | - * 채권 부책임운용역 : <u>이상</u> | -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작성 기준일 기준 업데이트 * 채권 부책임운용역 : <u>허송구</u>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 배분 및 과세 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| - (본문 생략) 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-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 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 는 이자·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 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집 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 고 있습니다. 다만, <u>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 음과 같은 범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u> | - (본문 현행과 같음) 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-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 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 는 이자·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 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집 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 고 있습니다. 다만, <u>2025년 1월 1일 이후</u> <u>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</u> <u>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</u> <u>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 등)가 수</u> <u>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</u> <u>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</u> <u>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</u> <u>다.</u> - (현행과 같음) |
| | - (생략) | |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| 라. 운용자산 규모 - | 라. 운용자산 규모 - 작성 기준일 기준 업데이트 |
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[간이투자설명서]

(작성 기준일 : 2025.01.31)

| 항 목 | 정정 전 | 정정 후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운용전문인력 | - * 채권 부책임용역 : <u>이상</u> | -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작성 기준일 기준 업데이트 * 채권 부책임용역 : <u>허승구</u> |